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동고동락국장
제출연월일	2021. 1. 25.

참여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준을 시행령(별표1)에 자세히 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 위임 조항이 삭제되어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01.04. ~ 2021.01.24. (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기후환경녹지국 환경안전관리과

□ 폐지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환 경 과 장	이 철 희
	환 경 자 원 팀 장	김 상 수
	담 당 자	전 현 기 (746-554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0. 6.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13., 2020. 6. 9.>
-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7. 12. 27.]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8.>
-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8.>
-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2020. 12. 8.>

[전문개정 2009. 6.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text{설치납부금액} =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설치비}$$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시설 부지 면적} \times \text{부지 매입단가}$$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text{시설 부지 면적(㎡)} = [1) + 2)] \times 100 \div \text{건폐율(\%)}$$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	소요면적
50톤/일 미만	$73.2\text{㎡} \times \text{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	$3,660\text{㎡} + 20\text{㎡} \times (\text{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	$4,660\text{㎡} + 25\text{㎡} \times (\text{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	$9,660\text{㎡} + 5\text{㎡} \times (\text{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	$11,000\text{㎡} + 5\text{㎡} \times (\text{시설용량} - 500)$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시설 설치비} = \text{소각시설 설치비} +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text{주민 편익시설 설치비}$$

가. 소각시설 설치비

$$\text{소각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text{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1) \div 2) \times 3) \times 4) \times 5) \times 6) \times 7)$$

-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2. 11.>
 - 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리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2014. 2. 11.>
 - ⑦ 제3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2014. 2. 11.>
- [전문개정 2009. 6. 16.]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9.10 조례 제980호
(일부개정) 2020.09.10 조례 제14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4.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등) 제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10.)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논산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중량제분투 배출량'을 '논산시 택지개발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논산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논산시 택지개발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8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8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17호, 2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관련 공문

양극화 해소,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



충청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1.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3249(2020.12.2.)호와 관련입니다.
2.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준을 시행령(별표1)에 자세히 규정하면서 기존의 조례 위임조항이 삭제되었으니, 조례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 관련 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부.
2.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충청남도지사

수신자 천안시장(청소행정과장),공주시장(자원순환과장),보령시장(환경보호과장),아산시장(자원순환과장),서산시장(자원순환과장),논산시장(환경과장),계룡시장(환경위생과장),당진시장(자원순환과장),금산군수(환경자원과장),부여군수(환경과장),서천군수(환경보호과장),청양군수(환경보호과장),홍성군수(환경과장),예산군수(환경과장),태안군수(환경산림과장)

주무관	자원순환팀장	환경안전관리 전결 2020. 12. 3. 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환경안전관리과-23487 (2020. 12. 3.)	접수 환경과-51673 (2020. 12. 3.)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환경안전관리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451	팩스번호 041-635-3065 / tulip@korea.kr / 대국민 공개